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. 10. 4 선고 2017가단62899 판결 [명의신탁해지로 인한
소유권이전등기 청구]

전 문

원고 1. A

2. B

3. C

4. D

피고 1. E

2. F

3. G

4. H

5. I

6. J

7. K

8. L

9. M

10. N

11. O

12. P

13. Q

14. R

15. 정안건설개발 주식회사

변론 종결 2018. 8. 30.

판결 선고 2018. 10. 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평택시 S 임야 595m² 중 별지1.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지분에 관하여 별지2. 목록 각 소장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망 T은 분할 전 안성시 U 임야 4정 4단 6무보(이하 '분할 전 토지'라 한다)의 단독 소유자였는데, 1958년경부터 여러 매수인들에게 분할 전 토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분할 전 토지 전체에 대한 매도한 토지의 면적 비율만큼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나. 망 V는 W, X, I와 함께 1958. 2. 10. 망 T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위치가 특정된 600평을 매수하면서 공유지분을 이전받았다.

다. 분할 전 토지는 1975년 각자 매수한 특정 부분 및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5개 필지로 분할되었고(1983. 1. 15. 평택시 Y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. 이하 분할 후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지번만을 적시한다), 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상 소유관계 및 지분비율 등이 분할 후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었다.

라. 망 V가 망 T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특정하여 매수한 토지는 분할 후 토지 중 평택시 S 임야

595m² 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이고, 망 V 생전에 위 토지를 부친 묘지로 사용하며 배타적으로 점유·관리하여 왔다.

마. 분할 전 토지의 구분소유자별로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기하여 각 구분소유 토지별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도모하기 위한 소송이 199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순차적으로 제기되었고, 각 승소확정판결을 통해 분할된 토지 중 Z, 이 사건 토지, AA을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모두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 분할 전 토지의 분할 후 지변별 현재 명의인 현황은 다음 표과 같다.

U(분할 후 AB)	AC
Z	공유를 잔존
AD	E
AE 내지 AF	AC
AG	H
AH	G
AI	AJ
AK	AL
AM	F
S(이 사건 토지)	공유물 잔존(망V 구분소유 주장)
AN	AO
AP	AQ
AA	공유를 잔존(망V 측이 AR 의 구분소유라고 주장)
AS	AT
AU 내지 AV	AJ

바. 망 V는 2009. 7.경 사망하였고, 원고들이 망 V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자 지위를 각 1/4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.

사. 피고들은 원고들과 함께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1.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다(다만 등기부상 공유자로 등재된 망 AT는 사망하여 피고 K, L, N가 그 상속인이고, 망

AL는 사망하여 피고 O, P, Q, R이 그 상속인이며, 망 AQ도 사망하여 피고 J, I가 그 상속인이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망 T은 분할 전 토지 중 일정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편의상 매수인들에게 그 매수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,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(상호명의신탁관계)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고,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.

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.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지분에 관하여 별지2. 목록 각 소장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.

판사송현직

별지